

○ 개요

-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·해저자원·관광자원·수자원·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·개발하고, 지역의 소방사무,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 보호·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·오물처리시설·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

○ 과세대상

- (특정자원·시설분)** 발전용수, 지하수, 지하자원, 컨테이너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, 원자력발전, 화력발전
- (소방분)**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(주택의 건축물 부분 포함) 및 선박(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 제외)

○ 과세표준 및 세율

- (특정자원·시설분)**

구 분	발전용수	원자력	화력발전	지하수	지하자원	컨테이너
세율 /과표	2원/10m³	1원/kWh	0.3원/kWh	· 음용수 : 200원/m³ · 목욕용 : 100원/m³ · 기 타 : 20원/m³	채취가액의 0.5%	1만5천원 /TEU

- (소방분) 재산가액의 0.04~0.12%**

과세표준	세 율
600만원 이하	0.04%
600만원 초과 1,300만원 이하	2,400원 + 600만원 초과금액의 0.05%
1,300만원 초과 2,600만원 이하	5,900원 + 1,300만원 초과금액의 0.06%
2,600만원 초과 3,900만원 이하	13,700원 + 2,600만원 초과금액의 0.08%
3,900만원 초과 6,400만원 이하	24,100원 + 3,900만원 초과금액의 0.10%
6,400만원 이하	49,100원 + 6,400만원 초과금액의 0.12%

※ ① 저유장·주유소·정유소·유흥장·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비주거용 건축물 등 일반세율의 2배 중과세
② 대형마트·복합상영관·백화점·호텔 및 11층 이상 비주거용 건축물 3배 중과세
③ 오물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에 총당하는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0.0023%

○ 부과·징수방법

-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
-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·징수